제출부서 : 환경위생과

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
제출연월일: 2026. 11. .
제 출 자: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

1. 제안이유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나. 책무(안 제2조)

다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자문(안 제3조～제4조)

라.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(안 제5조 ~ 제8조)

마.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(안 제9조)

바. 재정지원, 홍보 및 표창(안 제10조～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입법예고 : 입법예고(2026. 9. 30. ~ 10. 20.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규제사전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: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

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　　호

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영종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며,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,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.

제3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제출부서 : 환경위생과

1.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

2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
3. 학교·사회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

4.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

5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자문)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
제5조(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)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
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

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

5. 환경체험 및 보전활동의 활성화

6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

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.

1.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2. 공공기관·기업·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

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
4.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
5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실시)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)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9조(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교육센터(이하 “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개발 및 보급

2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
3.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·협력

제출부서 : 환경위생과

4.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

5.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
6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탁·운영하는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와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재정지원 등)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, 사회환경교육기관,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홍보 및 표창)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관별·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·홍보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상위 및 관계 법령

[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]

[시행 2026. 9. 26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제4조(책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.

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5조(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<개정 2025. 3. 25., 2025. 10. 1.>

1.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·도의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
3.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
4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<개정 2025. 3. 25.>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(이하 “지역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5. 10. 1.>

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,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출부서 : 환경위생과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조례안명 : 인천광역시 영종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비용발생 요인

- 안 5조(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), 안 7조(사회환경교육의 실시), 안 9조(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), 안 10조(재정지원 등), 안 11조(홍보 및 표창)의 규정에 의해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

※ 추진 절차와 지원기준 등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전으로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나, 1회 시행 비용을 추계하여 제시 (**총비용 : 151,952천원, 연평균비용 : 30,390천원**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7년)	2차년도 (2028년)	3차년도 (2029년)	4차년도 (2030년)	5차년도 (2031년)	합계
세출	학교 환경교육 지원(제5조)	6,500	6,695	6,896	7,103	7,316	34,510
	재정지원 등(제10조)	22,000	22,660	23,340	24,040	24,762	116,802
	홍보 및 표창(제11조)	120	124	128	132	136	640
	계	**28,620**	**29,479**	**31,275**	**31,275**	**32,214**	**151,952**

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사회환경교육,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지원 여부와 운영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변동성이 크므로 현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산술적 추계가 어려움

제출부서 : 환경위생과

4. 작성자

도시관리국　환경위생과장　이 희 주